

시설급여 평가지표13(12) 시설기준

Q32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자원봉사자실로 겸용한다면 평가 시 시설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의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 요양시설은 자원봉사자실과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므로 시설기준 미준수로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4(13) 특별침실

Q33

특별침실에는 이용자가 없을 때도 침대 및 기타 옷장 등 생활용품 모두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나요?

- 평상 시 특별침실을 일반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용자 없이 빈 방으로 두는 경우 모두 특수상황 발생 즉시 특별침실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침대 등 용품을 갖추어 운영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5(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34

와상 어르신만 있는 층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다른 층에는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 와상 수급자만 있는 층이어도 계단출입구, 외부출입구가 있다면 잠금장치를 갖추고,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외부출입구는 배회수급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계단출입구는 수급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각각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상구로 지정된 출입통로의 문도 자동열림장치 기능이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주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도 수급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내에서 주방으로 출입자체가 차단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주방에서 나가는 외부출입구의 자동열림장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 단, 엘레베이터로만 통하는 외부출입구의 경우는 비상 시 엘레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미설치 시 예외적으로 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15(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35 온·습도계, 환기장치는 침실마다 설치해야 하나요?

- 온·습도계는 층별로 1개 이상 구비해야 하며, 환기장치는 시설 내 1개 이상 있을 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5(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36 주방과 물리치료실은 지하 1층, 침실은 지상 2층부터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방에 문이 설치되어야 하나요?

-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주방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평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5(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37 안내표지판, 위치도, 표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안내표지판은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이 각 층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각 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1층-면회실, 식당, 원장실 / 2층-간호사실, 툴립마을(201~205호), 장미마을(206~210호), 물리치료실 / 3층-옥상)
- 위치도는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실별 표찰은 방문에 부착하여 해당 실이 어떤 용도의 방인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5(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38

피난안내도가 각 층에 비치되어 있고 피난안내도에 해당 층에 모든 것이 표기 되어 있다면(예: 침실, 물리치료실 등) 별도의 시설 안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각 실별 표찰이 부착되어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층마다 해당 층에 대한 모든 시설이 피난안내도에 표기되어 있다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현장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6(15) 낙상예방 환경조성

Q39

목욕실 외 화장실 세면대 옆에 설치된 샤워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 화장실에 설치된 샤워기라도 그 용도가 실제로 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6(15) 낙상예방 환경조성

Q40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 평가 시 기관 내부 안전손잡이 설치여부는 '수급자의 접근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잠금장치 설치 등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로 확인된다면 안전손잡이 설치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6(15) 낙상예방 환경조성

Q41

병원과 병용하여 사용하는 물리치료실의 안전손잡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 병용공간 또한 수급자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시설급여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의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6(15) 낙상예방 환경조성

Q42

안전한 성분의 미끄럼방지 스프레이를 통해 미끄럼 방지처리를 해도 되나요?

- 낙상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처리는 목욕실, 화장실 등 낙상위험이 높은 공간의 바닥전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있음을 확인하며 미끄럼방지 타일, 미끄럼방지 매트, 페인트, 스프레이 모두 가능하나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 기능을 하는지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7(16) 식품위생관리

Q43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조리실 위생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일체의 식사와 간식의 조리준비, 조리, 그릇세척 등 전 과정을 외부 위탁업체에 의뢰 및 제공하여 조리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방 및 집기류의 소독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식사와 간식의 조리준비, 조리, 그릇세척 등 일부만 위탁하고 일부는 시설에서 제공할 경우, 조리실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방 및 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기록 및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4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전·후 손 씻기 기준이 궁금합니다.

-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급자 1인당 서비스 제공 전·후마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식사(간식)보조, 기저귀 교환, 소변 비우기, 욕창간호, 의료 폐기물을 다룬 후, 쓰레기를 다룬 후 등을 관찰합니다.
- 식사·간식 보조의 경우는 '수급자 개인'이 아닌 '식사·간식 보조'라는 서비스 항목 전·후로만 손을 씻어도 인정합니다. 다만 식사·간식 보조에서도 오물이 묻은 경우는 반드시 손을 씻는지 관찰하여 평가합니다.
- 장갑을 낀 경우, 반드시 장갑을 벗고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장갑을 낀 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5

**동일법인·동일대표자 기관 내 전원 시 수급자의 결핵검진 포함
검진자료를 대체하여 인정하는데 양로원도 포함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자의 기관 내 전원하는 수급자는 서비스 연속성을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6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품(산소마스크, 드레싱세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소독장부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시설에 비치된 간호비품의 소독여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현재 사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수급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소독,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7

EM 소독제로 실내·외 자체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되나요?

- 평가지표18(17) 기준④에 따라 자체소독은 2021.1월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전문소독제(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의약외품으로써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를 사용해야 하므로 락스, 세제, EM 소독제 등은 불인정합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소독의 방법
- 평가지표18(17) 기준⑤에 따라 일상소독은 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급자 생활환경에 대해 매일 실시하는지 확인하며, 이 때 적절한 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소독용 알코올 등으로 이 외 소독제는 제품설명서에 소독의 효능이 확인된다면 인정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내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8 수급자 생활실 내 화장실 세면대에도 손세정제를 비치해야하나요?

- 평가지표18(17)감염관리활동 기준①에 의해 직원의 위생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기관 내 세면대에 손세정제를 비치해야합니다. 다만, 손세정제 비치로 치매 등 수급자의 안위가 위협될 것이 예상될 시, 직원별 휴대용 손세정제(손소독제아님) 구비 등으로 급여제공 시 손세척이 가능한 대안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생활실 내 세면대는 손세정제가 비치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9 일상소독 시 사용하는 소독제에 클리닉줄액(글루타랄농축액 / 방역용살균소독제) 제품을 사용해도 가능할까요??

- 평가지표18(17) 기준⑤에 따라 일상소독은 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급자 생활환경에 대해 매일 실시하는지 확인하며, 이 때 적절한 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소독용 알코올 등으로 이 외 소독제는 제품설명서에 소독의 효능이 확인된다면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50 손세정제에 비누가 포함되나요?

-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기준①번은 기관 내 모든 세면대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여 손씻기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손 세정제는 물로 세척 가능한 계면활성제를 의미하며 비누도 물을 통한 세정작용이 되기 때문에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감염병관리

Q51 결핵 검사에는 흉부 영상검사, 객담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해도 인정되나요?

- 흉부 영상검사, 객담검사 모두 가능하며, 결핵 검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발행 건강진단서로서 결핵 검사의 내용과 그 결과(판독)가 확인된다면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감염병관리

Q52

와상 수급자도 무조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모든 수급자에게 '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감염병관리

Q53

등급외자로 입소 시 감염병 진단 자료를 제출했고, 입소 이후 장기 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진단 자료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 등급외자라도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검사는 입소일부터 적용하여 등급외자 입소 당시 제출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0(19) 소방시설

Q54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소방점검은 하나로 작성해도 되나요?

- 병설기관 전체 점검 후 하나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급여종류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1(20) 전기ガ스설비

Q55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3년에 한번만 점검하는데, 인정되나요?

-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기준 2번 '매월 점검'은 충족합니다.
- 또한 외부업체가 법적대행업체로 확인되는 경우 기준 1번 '연 1회 점검'도 충족합니다. 다만 법적대행업체가 아닌 경우 전기안전공사, 법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연 1회 점검이 확인되어야 기준 1번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1(20) 전기ガス설비

Q56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기관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일 경우는 3년에 한번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여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연 1회 받지 않은 경우 불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1(20) 전기ガス설비

Q57

선임된 안전관리자에 의한 점검이 무슨 뜻인가요?

- 전기가스설비21(20) 기준①의 경우 일전에는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인정했으나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2021.2월부터는 한국전기안전 공사, 한국 가스 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 의한 점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지표 기준②의 경우 매월 하는 점검으로 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업체, 외부인 중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2(21) 재난상황대응

Q58

기관에서 선택한 1가지 재난상황(화재)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면 인정되나요?

- 2021년 평가매뉴얼에 제시된 재난상황 중 1가지 이상의 재난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지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화재에 대한 매뉴얼 및 훈련도 인정합니다.
- 다만, 화재 이외 다른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에 대한 훈련도 실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2(21) 재난상황대응

Q59

재난상황대응 훈련 시 참여 못 하거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의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하나요?

- 재난상황 대응 훈련의 참석률은 확인하지 않으나 모든 대상자가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반기별 1회 이상 훈련 참여를 권고 드립니다.
※ 추후 평가 시 직원 무작위 선정을 통해 면담 예정

시설급여 평가지표22(21) 재난상황대응

Q60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

-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 병설기관에서 자위소방대를 함께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한 경우 평가대상 기관별 수급자와 종사자가 참여한 훈련실시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가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COVID-19

시설급여 평가지표22(21) 재난상황대응

Q61

코로나 19 관련 재난상황대응훈련을 훈련이 아닌 교육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이상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도면(피난안내도)를 이용하여 재난상황 매뉴얼에 따라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별 임무 및 역할, 훈련 문제점 발굴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교육 및 토론형식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시설급여 평가지표23(22) 응급상황대응

Q62 목걸이 형태의 응급상황 알림장치(응급벨)도 인정되나요?

- 평가에서는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각 침실, 화장실, 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응급상황 알림장치('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수급자에게 목걸이 형태로 제공한다면 수급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야간보호

Q63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근무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 경우 인정되나요?

- 해당 기관의 인력으로 신고된 사람 중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의 [별표5]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입소자에 대한 상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야간보호

Q64 야간근무처리지침에 2020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그대로 반영하여 2시간마다 점검사항을 담았을 경우 야간점검일지에 2시간마다 점검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 인정되지 않나요?

- 평가지표24(23) 야간보호 기준②의 야간근무지침은 기관의 운영 사항에 맞게 반영함을 확인하므로 근무실시 항목에 두시간마다 점검하는 내용까지 반영이 되었다면 동지표 기준③에 점검시간 및 안전점검내용과 관계된 내용이므로 그에 따른 수행을 하고 있는지 평가 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야간보호

Q65 야간근무 지침 중 준비확인 확인자에 관해 문의합니다.

- 평가지표24(23) 야간보호의 기준②는 야간근무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는지를 야간근무지침 표준(안) : 근무준비, 준비확인, 근무실시, 초동대처, 당직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통해 평가하며, 기준③은 야간점검일지에 일자, 점검시간, 수급자상태, 안전점검내용, 점검자의 항목을 통해 평가 시 확인함을 안내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야간근무지침 표준 참고(2020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관한 내용으로 기준②, ③에 대해 참조 목적으로 첨부했고 반영의 정도는 기관의 운영 사항에 따르므로, 자세한 반영을 위한 야간근무지침 표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5(24)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Q66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의미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중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즉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예 : 표준약관 등)

※ 게시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기관 로그인/나의 블로그

시설급여 평가지표26(25)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Q67 문자, 카톡, 유선을 통해 수급자(보호자) 상담 진행 시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지 기록으로 평가하며 일자,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이 확인되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문자, 카톡, 유선으로 상담을 실시하더라도 확인사항(일자,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을 포함한 기록이 확인되어야합니다.